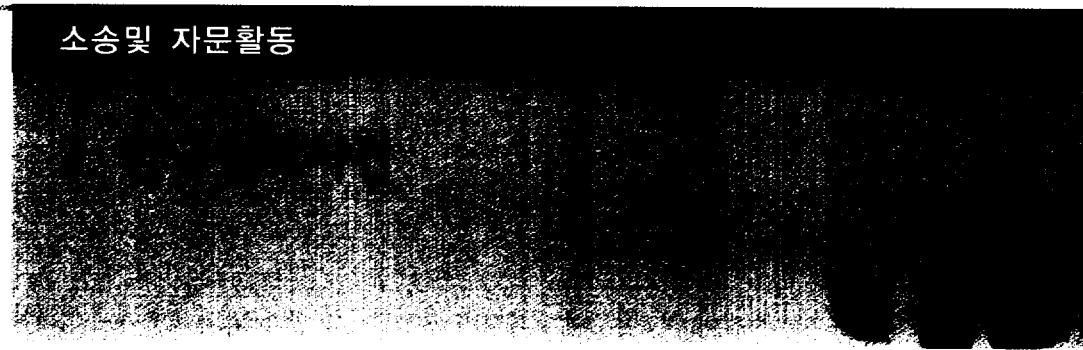


소송 및 자문활동



(1) 사건개요 및 활동일지

1) 사건개요

본 사건은 한국전력공사가 제주대학교에 대하여 제주대학교 구내 건물에 있는 아라뮤즈홀과 카페 라뮤즈의 사용전력이 교육용이 아닌 일반용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교육용임을 주장할 수 있는 입증방법을 찾고 이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활동일지

1. 한국전력공사와 제주대학교간에 체결된 전기공급약관의 성질 검토

- 가. 약관의 해석방법에 대한 조사
- 나. 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약관의 설치관련 법률조사
- 다. 약관의 구속력에 관한 판례와 사례를 조사

2. 여러 가지 대응책 강구

가. 제소의 경우

- 1) 채무가 부존재함을 합리적으로 주장하는 방법 도출
- 2) 소송에 해당하는 채무액의 산정과 그 없음의 주장

나. 제소외의 경우

- 1) 유사사건에 관련된 타학교와의 연대

3. 자료정리 – 리걸클리닉 사이트에 관련 자료 게재

(2) 법률의견서의 작성계획서

I. 사실관계의 정리

한국전력 제주특별지사에서 2011. 7. 29. 제주대학교에 전기사용 위약 안내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전기사용 위약 안내의 내용은 아라뮤즈홀과 라뮤즈는 ① 교육활동과 무관하거나 ② 수익사업이거나 ③ 학생이나 교직원보다 일반인이 주로 이용하는 기타시설이므로 교육용전력의 비적용 대상이라는 것입니다(적용근거 전기공급약관 제58조 및 세칙 41조).

II. 참조약관

전기공급약관 제58조【교육용전력】

① 교육용전력은 계약전력 4kW 이상으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고객에게 적용합니다.

1.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부속병원 제외),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력 인정 평생교육시설

③ 교육용전력은 동일 전기사용계약단위 내의 부대시설을 포함하여 적용합니다. 다만, 사택은 부대시설로 보지 않습니다.

시행세칙 제38조【계약종별의 구분】

④ 약관 제58조(교육용전력) 제3항 및 제59조(산업용전력) 제4항의 “부대시설”이라 함은 주된 시설의 종업원 등이 주로 이용하는 보조치설로서 식당, 목욕탕, 의무실, 매점, 이·미용실, 사무실, 보안용 외등 및 독신자 학숙소(기숙사 포함)등의 시설을 말하며, “동일 전기사용계약단위 내의 부대시설을 포함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경우란 주된 시설과 동일한 전기사용계약단위 내의 부대시설로서 주된 시설의 전기설비 용량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시행세칙 제41조【교육용전력】

① 교육용전력은 약관 제58조에 열거된 법률에 의거 설치한 교육시설로서 다른 용도의 시설과 명확히 구분된 경우 적용한다.

② 교육용전력은 법률에 따른 교육시설주체가 전기사용계약당사자인 경우로서 교수·학습활동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시설인 교실(강의실), 도서실, 실험실습실, 학생회관 등 ① 교육기본시설과 교육시설주체가 전기사용계약당사자인 경우로서 학생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중 교육본연의 목적 달성과 관련된 수영장, 체육관, 강당 등의 ② 지원시설 및 부설연구소 등 ③ 연구시설에 대하여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약관 제58조(교육용전력) 제1항에서 정한 적용대상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부속병원 제외) 초등학교·중학교(방송통신중학교 포함)·고등학교(방송통신고등학교 포함)·대학(단과·종합, 대학원 포함), 교육대학 및 사법대학, 전문대학·방송통신대학·산업대학·기술대학, 기술학교·고등기술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 특수학교, 각종 학교(외 국인학교, 대안학교, 영재학교, 소년원학교, 예술학교, 신학교 등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준하는 학교) 다만,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법률”에 따라 인가 또는 등록된 각종 학원은 제외한다.

④ 약관 제58조(교육용전력)제3항의 부대시설이라 함은 ④ 후생시설 및 교육목적 수행과 관련된 ⑤ 부속시설을 의미한다.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약관의 해석) ②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일반원칙) ①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다.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2.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3.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III. 약관이 구속력을 인정하기로 한 경우 활동 방향

1. 아라뮤즈홀

가. 아라뮤즈홀은 교육시설입니다.

(1) 관련 법률에 설치되었는지(아라뮤즈홀의 등록현황에 대해 조사하겠습니다.)

(2) 교육본연이 목적달성을 위해 직접적으로 필요한 시설인지

(아라뮤즈홀의 설립목적 및 취지를 조사하겠습니다.)

(3) 학교법인이 전기사용계약 당사자인지

(전기사용계약서를 검토하여 전기사용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 검토하겠습니다.)

나. 아라뮤즈홀이 교육시설이 아니라면 교육부대시설입니다.

(1) 학교와 동일한 장소 내에 위치하고

(2) 학생과 교직원이 주로 이용하며

(아라뮤즈홀의 이용현황에 대해 조사하겠습니다.)

(3) 교육목적수행에 기여하는 지

(4) 주된 시설의 전기설비 용량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5) 수익사업이 아닐 것

(이 요건은 명문의 규정에 명시되지 않았고, 내부지침에만 규정되어 있으므로 구속력이 없음을 주장하겠습니다.)

2. 라뮤즈는 부대시설 중 후생시설입니다(시행세칙 41조 4항).

(1) 학교와 동일한 장소 내에 위치하고

(2) 학생과 교직원이 주로 이용하며

(3) 교육목적수행에 기여하는 지

- (4) 주된 시설의 전기설비 용량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 (5) 수익사업이 아닐 것

3.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2항에 의하여 그 뜻이 명백하지 않을 경우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겠습니다.

IV. 약관의 구속력을 부정하기로 한 경우 활동방향

-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 (2)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 (3)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V. 관련 사례 및 판례를 조사하겠습니다.

(3) 법률의견서의 추가보고서

1. 전기공급약관의 성립과정

가. 관련조문

전기사업법 제12조 (전기의 공급약관) ① 전기판매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이하 "기본공급약관"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7조(기본공급약관에 대한 인가기준)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에 대한 인가 또는 변경인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기요금이 적정 원가에 적정 이윤을 더한 것일 것
2. 전기요금을 공급 종류별 또는 전압별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을 것
3. 전기판매사업자와 전기사용자 간의 권리의무 관계와 책임에 관한 사항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을 것
4. 전력량계 등의 전기설비의 설치주체와 비용부담자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을 것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 (기본공급약관의 내용)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자

가 작성하는 기본공급약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가. 공급구역 나. 공급의 종류 다. 공급전압 및 주파수 라. 전기요금
- 마. 전력량계 등의 전기설비 설치주체 및 내용과 전기설비공사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 바. 공급전력 및 공급전력량의 측정 및 요금계산 방법
- 사. 전기판매사업자와 전기사용자 간의 책임분계점
- 아. 전기의 사용방법 및 기계·기구 등 용품의 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
- 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른 공급조건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나. 전기공급약관의 성질

(1) 전기사업법은 다수의 일반수요자에게 생활에 필수적인 전기를 공급하는 공익사업인 전기사업의 합리적 운용과 사용자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계약자유의 원칙을 배제하여 일반전기사업자와 일반수요자 사이의 공급계약조건을 당사자가 개별적으로 협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오로지 공급규정의 정함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전기요금에 관하여는 공공요금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결정이라는 입장에서 엄격한 절차를 요구하고 있어 이러한 공급규정은 일반전기사업자와 그 공급구역 내의 현재 및 장래의 불특정 다수의 수요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모든 전기공급계약에 적용되는 보통 계약약관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대법원 1989.4.25. 선고, 87다카2792, 판결)

(2) 전기공급약관 제12조는 단지 한국전력공사 내부의 업무처리지침을 정한 것에 불과할 뿐 국민에 대하여 일반적인 구속력을 갖는 법규로서의 효력은 없다(서울지법 2000.12.27. 선고, 2000나 30546, 판결:확정).

2. 한국전력에 대한 우리학교의 주장

가. 약관이 구속력을 인정하기로 한 경우 활동 방향

(1) 아라뮤즈홀

(가) 아라뮤즈홀은 교육시설입니다.

- i. 아라뮤즈홀은 교육연구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 ii. 아라뮤즈홀의 주 목적은 중국, 인도, 몽골 등 외국인 유학생, 유학 예비생, 제일본제주인 3~4세대 및 세계각지의 제주인 후세대들에 대한 우리문화 교육 서비스 제공입니다.
- iii. 전기사용계약 당사자는 제주대학교입니다.

(나) 아라뮤즈홀이 교육시설이 아니라면 교육부대시설입니다.

- i. 아라뮤즈홀은 학교와 동일한 장소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 ii. 학생과 교직원이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 iii. 아라뮤즈홀의 교육목적수행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iv. 주된 시설의 전기설비 용량을 초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 v. 수익사업이 아닐 것이라는 요건은 명문의 규정에 명시되지 않았고, 내부지침에만 규정되어 있으므로 구속력이 없음을 주장하겠습니다.

(2) 라뮤즈는 부대시설 중 후생시설입니다(시행세칙 41조 4항).

- i. 라뮤즈는 학교와 동일한 장소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 ii. 학생과 교직원이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 iii. 라뮤즈는 교육목적수행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iv. 주된 시설의 전기설비 용량을 초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 v. 수익사업이 아닐 것이라는 요건은 명문의 규정에 명시되지 않았고, 내부지침에만 규정되어 있으므로 구속력이 없음을 주장하겠습니다.

(3)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2항에 의하여 그 뜻이 명백하지 않을 경우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겠습니다.

나. 약관의 구속력을 부정하기로 한 경우 활동방향

-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입니다.
- (2)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입니다.
- (3)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입니다.

3. 피고의 예상 항변

가. 아라뮤즈홀

(1) 아라뮤즈홀은 공연장이다.

(가) 시행세칙 제41조에 규정되어 있는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연구시설에 대한 조항은 예시조 항입니다. 그러므로 공연장이라는 이유만으로는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연구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나) 공연장으로 등록되어 있는 이유는 시설이 일정한 인원 이상을 수용할 경우, 재해나 위난시에 신속한 피난을 위한 설비를 설치하기 위해서입니다.

(2) 수익목적사업은 교육목적수행이 아니다.

(가) 아라뮤즈홀의 주 목적은 중국, 인도, 몽골 등 외국인 유학생, 유학 예비생, 제일본제주인

3-4세대 및 세계각지의 제주인 후세대들에 대한 우리문화 교육 서비스 제공입니다.

(나) 수익목적사업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아라뮤즈홀은 교내사용비율이 65%로 외부 대관보다 사용비중이 높습니다. 또한 외부대관시에도 일반시장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의 최소실비정도의 대관료만 수령하고 있습니다. 약관규제법 제5조에서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판례 역시 전기공급약관 위규정은 원고를 비롯한 고객의 이익을 위하여 엄격하게 해석·적용되어야 한다(서울고등법원 2009. 11. 27. 선고 2009나23223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라뮤즈홀을 수익사업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이 수익사업으로 규정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다) 설령 수익목적사업이라도 하여도, 시행세칙 제41조에서는 교육시설일 경우 학습활동에 직접 필요한 시설일 것을, 지원시설일 경우 교육분연 목적달성과 관련될 것을, 부속시설일 경우 교육 목적수행과 관련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러한 교육목적수행에만 관련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교육목적수행에 관련되어 있다면, 부가적으로 수익목적사업을 하여도 관련조문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나. 라뮤즈

(1) 운영형태가 외부민간위탁이다.

(가) 라뮤즈의 실질적인 운영형태는 외부민간위탁이 아닙니다. 라뮤즈의 운영시간은 학교 주위의 다른 까페들처럼 오후8시 이후 혹은 주말에는 영업을 하지 않고 교내운영시간과 같습니다. 이는 다른 까페들은 수익을 위하여 외부 손님들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영업시간을 학교운영시간보다 길게 하는 것이며, 라뮤즈는 교내구성원을 위한 후생시설이므로 교내운영시간과 같이하는 것입니다.

(나) 시행세칙 제41조 2항에서는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연구시설일 경우 교육시설주체가 전기 사용계약당사자일 것을 요건으로 하지만 시행세칙 제41조 3항의 부속시설과 후생시설의 경우 이러한 요건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의 구조적 관점에서 2항에 규정되어 있는 요건이 3항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이는 3항에는 2항과 같은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운영형태가 외부민간위탁이라 하여도 부속시설이거나 후생시설인 라뮤즈는 전기공급약관 위반이 아닙니다.

(2) 수익목적사업은 교육목적수행이 아니다.

(가) 라뮤즈는 교육목적수행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① 라뮤즈는 근처에 있는 국제교류회관을 방문한 외국인, 게스트하우스에 숙박 중인 외부손님들, 교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강사분들께서 후생 시설로 이용합니다. 또한 ② 라뮤즈는 많은 학생들의 스터디공간으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나) 수익목적사업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약관규제법 제5조에서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판례 역시 전기

공급약관 제44조 제1항의 위약금 규정이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적법한 계약 내용으로 편입되어 효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규정은 원고를 비롯한 고객의 이익을 위하여 엄격하게 해석·적용되어야 한다(서울고등법원 2009. 11. 27. 선고 2009나23223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라뮤즈를 수익사업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이 수익사업으로 규정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다) 설령 수익목적사업이라도 하여도, 시행세칙 제41조에서는 부속시설일 경우 교육목적수행과 관련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러한 교육목적수행에만 관련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교육목적수행에 관련되어 있다면, 부가적으로 수익목적사업을 하여도 관련조문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라) 후생시설일 경우에는 시행세칙 제41조에 교육목적수행에 기여할 것이라는 요건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수익목적사업이라 하여도 위 조항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4. 절차적 대응방법

가. 주위 대학들과 연대하여야 합니다.

한림대학교 일송아트홀 역시 우리학교와 같은 공문을 한국전력에서 수신하였습니다. 이에 한림대학교에 메일을 보내어 그곳 상황에 대한 질의하였습니다. 이후 한림대학교를 비롯한 우리학교와 유사한 학교들을 연합하여 대응 할 수 있습니다.

나. 위약금추징시

(1) 제소전 대응방법

한국전력이 우리학교에 위약금을 추징할 경우, ① 합의 ② 전기위원회 위원회 및 다른 기관을 통한 재정, 조정 및 중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제소후 대응방법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소장

소 장

원고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 장관 권재진

전화 02-2110-3061

피고

한국전력공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2번지

대표이사 김종겸

전화 02-3456-3114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1.8.11 전기공급계약에 의한 위약금 ()원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피고는 2011.8.11. 원고와 체결한 전기공급계약에 의거하여 원고에게 제주대학교 내 아라뮤즈
홀과 동건불내 카페 라뮤즈에서 사용한 전력이 일반용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근거로 기존에 교육용
으로 사용했던 전기요금에 대하여 교육용과 일반용 전력요금의 차액의 2배를 위약금으로 요구하였
습니다.



2. 원고는 위의 사실에 대하여 아라뮤즈홀과 동건물내 카페 라뮤즈에서 사용한 전력은 교육용으로써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달리 교육용과 일반용 전력요금의 차액으로부터 발생하는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가. 전기공급계약은 보통계약 약관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므로 약관해석의 경우 약관의규정에 관한법률 제5조에 따라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합니다.⁴⁸⁾

나. 가항의 내용을 근거로 볼 때 아라뮤즈홀과 동건물내 카페 라뮤즈에서 사용한 전력은 교육용 전력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1) 아라뮤즈홀의 경우

가) 제주대학교내 위치한 아라뮤즈홀은 교육연구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기사용계약당사자는 제주대학교로서 외국인 유학생, 유학예비생, 재일본 제주인 3~4세대 및 세계각지의 제주 후세대들에 대한 우리문화 교육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 아라뮤즈홀의 사용자는 주로 학생과 교직원입니다(년 66% 이상). 또한 교육목적수행에 기여하고 있으며, 주된 시설의 전기설비 용량을 초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 피고가 주장하는 수익사업이 아닐 것이라는 요건은 전기공급약관이나 전기공급약관 시행 세칙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한국전력내부지침에만 규정되어 있는 사항으로 전기공급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입니다.

라) 피고가 주장하는 수익사업 기준의 판단근거는 외부대관비율입니다. 하지만 아라뮤즈홀의 외부대관비율은 40%이하이며, 비용면에서도 외부대관시 회당 40만원 이하의 최소실비로의 대관료 만 수령하고 있으므로 수입사업으로 규정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마) 가)~라)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아라뮤즈홀은 교육시설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47) 전기요금에 관하여는 공공요금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결정이라는 입장에서 엄격한 절차를 요구하고 있어 이러한 공급규정은 일반전기사업자 와 그 공급구역 내의 현재 및 장래의 불특정 다수의 수요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모든 전기공급계약에 적용되는 보통계약약관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대법원 1989.4.25. 선고. 87다카2792, 판결)

48) 전기공급약관 제12조는 단지 한국전력공사 내부의 업무처리지침을 정한 것에 불과할 뿐 국민에 대하여 일반적인 구속력을 갖는 법규로서의 효력은 없다(서울지법 2000.12.27. 선고. 2000나30546, 판결: 확정)

2) 카페 라뮤즈의 경우

가) 라뮤즈는 학생과 교직원이 주로(90% 이상) 이용하고 있으며 주된 시설의 전기설비 용량을 초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 라뮤즈의 운영형태는 외부민간위탁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일반 학교외부에 있는 카페와 달리 영업시간이 교내운영시간과 동일하며 주말에는 영업을 하지 않습니다. 이는 라뮤즈가 교내의 학생과 교직원을 위한 후생시설이라는 점을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다) 또한 라뮤즈는 교육수행목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국제교류회관을 방문한 외국연구자들이나 교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강사분들의 후생시설로 이용되고 있으며, 학생들에게는 스터디 공간으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라) 가)~다)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라뮤즈는 부대시설 중 후생시설입니다.

3) 또한 피고는 아라뮤즈홀과 카페 라뮤즈가 속한 건물내에서 일반용과 전력용을 구분할 수 있는 시설을 구비할 것을 요청하는 바 이에는 약 1억 5천만원의 시설비가 소요되므로 원고로서는 채무부존재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3. 따라서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위약금 채무는 없다고 할 것이고 이를 다투는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입증방법

- | | |
|-----------|--------------------|
| 1. 갑 제1호증 | 전기공급계약서 |
| 2. 갑 제2호증 | 전기공급약관 |
| 3. 갑 제3호증 | 아라뮤즈홀 대관현황 및 사용료현황 |
| 4. 갑 제4호증 | 한국전력공사 법인등기부등본 |
| 5. 갑 제5호증 | 한국전력독촉공문 |

첨부서류

- | | |
|--------------------|------|
| 1. 위 입증방법 | 2통 |
| 2. 영수필확인서 및 영수필통지서 | 각 1통 |

3. 송달료납부서	1통
4. 소장부본	1통

2011.10.27.

원고 대한민국
제주지방법원 귀종

(5) 최종의견서

1)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에 필요한 액수의 산정방법

가. 기간의 결정

계약체결시부터 기간을 산정하는 방법과 한국전력에서 독촉이 오는 시점에서 기산점으로 하는 방식에서 결정하여야 한다. 여기서 되도록 채무액이 적게 하는 것은 패소의 가능성을 염두에 둘 때 더 유리할 수 있다.

나. 액수의 결정

기간별 사용액(일반용 전력사용량)×0.3(일반용 전력사용량과 교육용 사용량의 차액)

2) 기타 공사비의 부당함을 확인시켜야 함

교육용과 일반용의 분리비용 약 1억5천만원 소요

3) 약관의 해석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고객에게 유리한 해석이 요함을 주장해야 함.